

2. 보기 (1)의 (가) (나) (다)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하여 보기(2)의 학생들이 대답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하는 학생의 수는?

<보기1>

갑(17세)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을이 운영하는 사과 전자상가에서 30만원 상당의 에어 이어폰을 구매하였다. 뒤늦게 갑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님은 에어 이어폰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다.

(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20세인 것으로 을을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기2>

- ①번 학생 (가)와 달리 (나)의 경우 을은 갑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갑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 ②번 학생 (가)와 달리 (다)의 경우 갑이 적극적인 사술로 자신이 행위능력자인 것처럼 을을 위계한 것이므로 을은 에어 이어폰 매매계약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번 학생 (가)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를 할 수 있다.
- ④번 학생 (나)와 달리 (다)의 경우 갑은 에어 이어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번 학생 (가),(나)와 달리 (다)의 경우 갑은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만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다.
- ⑥번 학생 (다)의 경우 행위능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것은 갑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상 갑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위계를 하지 않은 갑의 부모는 에어 이어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해설)

①번 학생 (가)와 달리 (나)의 경우 을은 갑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갑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

→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확답 촉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②번 학생 (가)와 달리 (다)의 경우 갑이 적극적인 사술로 자신이 행위능력자인 것처럼 을을 위계한 것이므로 을은 에어 이어폰 매매계약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인 것처럼 계약상대방에게 위계를 행사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취소가 불가하다.

(유효인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 불가)

③번 학생 (가)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를 할 수 있다.(×)

→ 매매계약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④번 학생 (나)와 달리 (다)의 경우 갑은 에어 이어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번 학생 (가),(나)와 달리 (다)의 경우 갑은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만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다. (×)

→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능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⑥번 학생 (다)의 경우 행위능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것은 갑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 상 갑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위계를 하지 않은 갑의 부모는 에어 이어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능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